

# 건축사협회의 당면과제와 해야할 일(2)

KIRA's Present Questions & Tentative Measure

최찬환 /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Choi Chan-Hwan

## 5. 조직의 활성화

### 1) 조직의 개편방향

대한건축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체제, 경영마인드를 가진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체계적인 조직체계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 협회는 현안 문제해결식에서 벗어나 장기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여 회원들에게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다함께 전향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하며, 회장의 임기에 따라 중단되거나 바뀌어졌던 지금까지의 협회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도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각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 설계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실태를 비교할 때 지금의 협회의 조직구성과 예산집행 대한건축사협회의 목적추구와 기능수행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 일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원들이 협회에 무관심하지 않도록 하고 집행부의 업

무처리에 오해와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업무의 기획과 예산 그리고 감사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모든 회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조직의 전문성을 살리고 기획기능을 보강하여 대외 교섭력을 강화할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내에 특수성있는 소그룹을 포용하고 별도의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중앙정부의 기구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보아왔으며, 이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의 노력은 모든 분야에서 쉼새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개선과 자기 발전적 진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외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순응하지 못한다면 쇠퇴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된다. 자기스스로의 변혁과 생존의 대처능력이 없다면 외부충격에 의해 개혁과 변화를 가져야 한다. 내부조직의 결속과 의견의 일치는 조직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협회는 회원의 공동 '선'을 위한 조직이며, 개별회원이 구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2) 윤리위원회의 기능강화

협회는 회원상호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의 해결에는 전원의 관심사로서 일치된 의견통일과 일사분란한 업무추진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회의 위상과 역할을 과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개인적인 비리나 품위의 손상이 현저한 회원에게 지나친 포용력을 드러냄으로써 협회의 자정능력을 상실하였고 개혁적이고 양심적인 회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등 보수적이고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단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였다. 이제는 문제회원의 발생시 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와 총회 또는 회장단의 결단을 통하여 협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고, 회원간의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건축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에게는 진심어린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므로써 회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그리고 모든 회원이 아끼는 협회가 되어야 하며, 회비징수에 골몰해서는 안된다.

### 3) 법제연구소의 조직과 기능강화

건축사업무는 설계 및 공사감리가 주종이며, 이는 인·허가를 받게 되므로 행정부에서 규제하는 법·제도가 건축사의 업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입법부나 행정관리가 일방적으로 제정·개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함께 공공성의 확보 그리고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설교통부에 제한된 건축공무원이 건축관련법제도를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여러회원들의 실무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법·제도를 연구하여 관련기관에 자료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가 개정시안을 미리 마련하여 법·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현재와 같이 행정부가 시안을 마련한 뒤 의견조치를 할 때 이를 검토하고 알기 알부하는 사후처리방식의 즉흥적 그리고 단속적인 대응방식은 힘만들지, 별 효과가 없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제연구소의 조직강화와 기능활성화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대외교섭력 강화와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논리적체계와 이론정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 그리고 지속적 연구가 요청된다.

### 4) 인력관리

건축설계는 창작활동으로 건축가의 창작력(idea)에 의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건축설계분야의 발전과 국제사회속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유명한 건축가를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설계인력의 조직화와 협동작업, 협력체제 등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고급인력의 양성과 창작활동의 지원, 고도한 전문성을 지닌 지원팀 육성 등의 전문인력양성 및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교육제도와 연관되며, 건축가에서부터 설계보조인력까지 그리고 기술자에서부터 기능공까지 전문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사무소의 경우 건축사보를 위시한 설계보조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정책적인 과제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협회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해결할 과제이다. 또한 건축사의 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에 대하여 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교육을 받게할 수 있고, 건축사협회 및 기타 건축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수기간은 매년 7일 이내, 교육대상자가 필요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축사 자격자의 건축사협회 정회원에 따른 문호개방을 전제로하여 등록건축사 뿐만 아니라 미등록 건축사도 모두 연수교육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등록건축사

와 미등록건축사의 특성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교육효과 운영의 묘를 살려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6. 협회의 역할과 기능

### 1) 열린 협회와 사랑방 모임

협회는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으나 일단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지지를 보내고 대외적으로는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사고전환이 필요할 것이나, 어느 누구나 협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폭넓은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 건축문화를 주도하는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열린협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협회공간이 협회내의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행사와 연극·영화공연, 전람회 등이 항상 열리고 있는 개방된 삶이 숨쉬는 공간이 되어 거리문화창달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2) 대의원의 전문성 활용

전국 각지에서 그 귀중한 시간과 경비를 들여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대의원들, 사실상 우리 건축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인 이들이 어렵게 모여 토의하는 것은 무언가를 토론하고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집행부 선임과 예산안 통과 등에 국한되어 있다. 회원 10명을 대신하여 참석한 대의원들은 10명의 회원들이 갈구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총회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의원이 다양한 전문 소그룹을 형성하여 집행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들의 의사가 협회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틀에 짜여진 행사진행과 진지함이 결여된 일회성 다혈질 발언들, 자기과시형 발언, 대안없는 시비성 문제제기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협회는 회원들의 불만을 들을줄 알아야 한다. 회원들의 소망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야 한다. 뜨거운 열정으로 협회발전을 고대하는 회원이 일부회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그와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불 붙여 한데 결집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회원이면 누구나 협회가 리더쉽을 발휘하여 불만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 3) 자금조달과 배분문제

협회에 따른 기구의 확대개편은 불가피 할 것이나 경제성이 요구될 것으로 본다. 각 조직의 경영마인드에 따른 자금조달과 부족한 부분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분산되어 있는 협회와 회원들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결집시키는데 협회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자유시장경제라는 입장과 공정거래

법에 따른 규제에 의해서,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설계감리비의 덤핑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감리의 원인이 됨은 물론 여러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고 건축사들을 피폐시키게 됨은 물론 협회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협회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 건축사의 창작활동은 가격경쟁보다는 질적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회원들과 협회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리라 본다. 덤핑과 부실한 업무는 건축사의 위상을 낮추게 되며, 건축사들의 소진된 경제적 역량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경쟁력을 상실시킴으로써 세계화의 작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의 건축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덤핑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 4) 건축사지원제도

협회에 등록을 하게되는 등록 건축사는 복지회비, 월정회비, 실적회비 등의 각종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기금이나 회비가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사업이나 공동사업으로 사용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등록 회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등록을 제한하는 역작용의 우려도 있다. 협회는 이와같은 기금이 신규회원의 등록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정책적으로 융자해주고 있는데 협회도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신규등록회원의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5) 공제제도

건축설계와 감리용역은 전문업무 분야이며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건축사의 업무는 재산권을 취급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원유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또한 막중해 고의 아닌 실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보증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건축부문에서의 공제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건설협회 등 다른 전문단체에서는 단체적으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술진흥육성법에서도 명문화가 되어 있다. 이와같이 타 전문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제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서 설계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이행보증, 하자보증, 현금지급보증, 계약보증 등의 다양한 공제제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부실설계, 부실시공으로 건축물에 대한 각종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한 후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하자보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하자보증제도는 크게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가 현안의 문제가 될 것이다.

보험제도가 개발·정착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공제제도의 운영은 필요하게 되며,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

임을 지는 신용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보험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며, 과도적 단계로서 공제제도를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연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6) 보험과 보증

개방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설계사무소는 보험과 보증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행이 다급한 상황이다.

건축사업무범위와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빠른 시일내에 이에따른 여건을 마련하여 신용사회의 풍토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방화에 따른 외국업체와 불가피하게 공동계약을 통한 설계를 해야할 경우 사무소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국업체와의 무리없는 작업을 수행하여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동으로 외국사무소와의 공동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7) 사회봉사

협회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국민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 따라서 건축이 소수의 돈많은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어비스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모든 국민이 건축사의 업무를 이해하고 그것이 국민생활에 대단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때 전문영역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고,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건축설계는 개인의 재산가치를 증식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여, 직업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설계에 대한 대국민 서어비스나 봉사가 지금보다 한층 확대되어야 한다. 서민주택, 농어촌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사회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 또는 시도건축사회별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8) 실비 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

기획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보수요율의 책정의 필요성은 지난번에 기술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설계의 질이 같지 않고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설계가 창작활동으로 볼 때 투입하는 인력과 그 기간이 매우 다를 수 있으며, 설계내용과 결과물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축설계비산정방법을 점차적으로 실비 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로 바꿔 설계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 산정방법은 각 설계사무소마다 그 설계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각 건축설계사무소마다 G&A(General Express & Administration)비율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G&A는 사무소의 간접운영비를 말한다. 실비정산 건축설계용역요율에서 중요한 것은 각 팀에 대한 인원의 직접인건비이다. 각 건축설계사무소마다 팀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실

비 정산 건축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G&A비율과 직접운영비 그리고 근무외에 초과 운임(휴가, 보너스, 예비군훈련, salary overhead) 등으로 산출한다. 설계비는 설계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산출된다. 대부분의 용역비는 실비정산에 의해 산출하고 있다.

## 7. 연구개발(R&D)의 투자

R&D투자는 종자(種子)에 해당된다. 한해의 수확을 거둘 때 이듬해 농사를 위해 가장 튼튼하고 좋은 종자를 골라 이를 사용한다. 이는 하느님의 법칙이다. 이를 게을리 하면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연구개발의 투자는 UR체제의 출범,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첫번째로 해야 할 방안이며, 또한 생존전략의 한 방편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매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살펴보면 포항제철이 2%, 현대자동차가 현재 매출액의 5.3%를 투자하고 있는데, 2000년에는 8%로 늘릴계획을 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건설회사가 일반적으로 2%내외를 R&D에 투자하는 것을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설계업무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중요시되므로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체보다 R&D 투자비율이 훨씬 늘어나야 마땅하다. 따라서 협회가 R&D 사업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연구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건축사협회의 R&D투자의 비율은 현재 거의 전무한(0.02%) 실정으로 시급하게 2%정도로 유지하여, 1%는 각 개별 건축사사무소가 투자하여 R&D사업을 하고, 나머지 1%는 건축사사무소가 할 수 없는 공동사업을 협회가 맡아서 R&D투자를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 사무소 단위로는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복투자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협회는 공동화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개별사무소가 하기 힘든 업무서비스를 제공해 집적이익과 공동화 잇점을 살릴 수 있다.

사실 건설업의 해외진출은 매우 활발하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니, 설계분야는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투자를 확대하는 길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R&D 투자가 매우 저조하다. 95년 전산업의 평균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1.8%이며 일본은 14%로써 우리나라보다 약 7.7배나 높다. 반면 광고선전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매출액의 11.5%를 사용해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4.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기술개발투자에 역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외면하고 광고선전에 요란을 떨고 있는 셈이다. 어느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어야 많은 소출은 낼 수 있다. 아무런 연구개발투자 없이 어떻게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건축사협회는 연구개발투자를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8. 시장개척과 판로확대

건축설계시장이 개방화가 됨에 따라 건축설계의 국내

외 시장개척은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건축설계 시장은 주문/판매시장으로서 외국설계업체들의 기술경쟁과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협회를 통한 시장개척과 판로확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설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여 디자인과 기술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건축설계의 발주조건과 형태가 개별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과제의 발굴 등 새롭고 적극적으로 잠재수요를 개척해야 하며, 종전의 피동적인 단순주문에 의한 수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건축설계의 발주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현상경기설계, Turn Key, Fast Track 등 새로운 방법이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CM, EC 등 건설업 전반에 큰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여건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충분한 사전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9. 학교교육+실무교육&기존인력 훈련프로그램

건축설계교육도 학교교육에 실무교육을 더한 교육이 필요하며, 협회가 회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DATA-BASE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사협회도 회원들의 개별사무소 단위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신규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개별 건축사무소에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개별건축사사무소는 숙달된 기능인력을 안정되게 공급받을 수 있게하여 실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능인력의 양성으로 공급기능을 확대해야 하며, 개별사무소 단위로 기존인력의 스카웃식의 확보방법은 수요를 부추켜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10. 결론

21세기 문턱에서 있는 이시대, 우리 건축인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있는 국면에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당면해 있는 지금은 UR과 건설회사의 설계참여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시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세계화, 개방화시대,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설계과정, 건설과정이 모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전달 보급관리하는 체계와 능력을 시급히 갖추어서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첨단, 정보화시대인 21세기의 건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건축사 활동지원, 인력양성, 정보화, 공동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앞에서 건축사업무의 기본적 논의, 건축사협회의 과제, 건축사협회의 권익신장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설명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일반론에 그친 것 같다. 그러나, 현실상황의 대한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미래의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미래에 대한 이념적 좌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